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9. 8.(수)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주)한국레저낚시방송-(주)CJ헬로비전 간 분쟁조정에 관한 건 - (2010-54-228) (비공개)

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 (2010-54-229)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76조의2 및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원안대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함.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총 7인) >

분 야		성 명	성 별	현 직	비 고
위원장		양문석	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신임
위원	학계	박동숙	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신임
		김도연	남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신임
	법조계	오승돈	남	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임
	관련 연구기관	김희수	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임
	시청자·소비자	김연화	여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원장	신임
	체육계	박성수	남	대한체육회 경영총괄본부장	신임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0-54-230)

-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32차 위원회('10. 6. 1) 보고 후, 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기준 마련(안 제40조)

-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재판매사업자(MVNO) 진입요건 강화(안 별표2)

- (당초안) 의무사업자를 통한 MVNO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별정1호 또는 별정2호)에 비해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 강화된 별도의 등록기준(별정4호)을 신설

구분	정의	등록 요건		
		재정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별정1호	교환설비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 제공	자본금 30억↑	기술계 자격자 3인↑ 기능계 자격자 2인↑	· 상설 이용자보호기구 설치(전담1인↑) · 이용자 불만처리절차 등이 명시된 이용약관 제정
별정2호	설비설치 없이 기간통신역무 제공	자본금 3억↑	기술계 자격자 1인↑	
<신설> 별정4호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MVNO	자본금 30억↑	기술계 자격자 3인↑ 기능계 자격자 2인↑	별정1, 2호의 요건 외에 ①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 설치, ②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 확보, ③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추가

- (수정안) 공정위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MVNO 등록기준 중 기술적 요건의 경우, 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현행기준(별정1, 2호)에 의하도록 함

③ 시설관리기관 등의 자료제출 절차 마련(안 제39조)

- (당초안) 시설관리기관 등의 '보유설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설비현황', '기타 방통위가 고시하는 자료'에 대해 반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설비 제공에 따른 매출 현황은 연 1회 제출하도록 규정

- (수정안) 규개위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설비제공 매출액 및 기타 방통위가 고시하는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외에 제출기한을 연 1회로 일원화

④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3)

- (당초안)

- ①공급원가 등을 고려할 때 이용대가를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②기타 이용대가 결정·유지와 관련하여 방통위가 정하는 행위를 금지
- 이통사가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하여 ①계약과 다르거나 ②부당히 낮게 ③차별적으로 또는 ④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및 ⑤기타 수익배분 거부·제한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정하는 행위를 금지

- (수정안)

- 공정위 의견과 규제위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조항(차별적인 수익배분 금지조항)을 삭제
- 자의적 판단소지가 높은 추상적 용어(“정상적 거래가격”, “적정한 수익배분” 등)를 구체화하고 포괄적 재위임 조항을 삭제

⑤ 기타사항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
-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 인가대상 범위 정비(안 제20조제5항)
- 선불통화권 발행 시 보증보험 가입절차 등 마련(안 제37조의2)
- 회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6)

사. 보고사항

1)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을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 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영업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적 규정 위반시 산정기준

위반 유형	부과 과징금
영업보고서 미제출	제출지연일 등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장부(자료) 미비치	1억원 이하
검증관련 명령 불이행	불이행 유형에 따라 1억원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② 영업보고서 허위기재 등 실체적 규정 위반시 산정기준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액 = 회계장부상 오류발생금액 × 부과기준율(0.5%~0.25%) ※ 기준금액 산정시 해당 사업자의 회계분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고, 오류발생금액이 높을수록 부과기준율을 다소 경감
필수적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자료의 위·변조, 고의적 은폐 조작에 대한 가중률 적용
추가적 가중·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 증감, 위반행위 반복여부에 따라 추가적 가중·감경 ■ 자진 시정, 자체교육, 회계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노력시 경감 등

2)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 간 협상체결 시 따라야 할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 주요 내용

①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의무사업자가 허용

②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 도매제공 대가산정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 비용을 차감해 산정토록 함
- 소매요금은 MNO*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을 적용
- 회피가능비용은 MNO가 MVNO에게 할인해주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MNO는 MVNO에게 소매관련 비용 전부를 할인해주고, MVNO가 자체 유선설비 보유시 추가할인토록 함

* MNO : Mobile Network Operator(이동통신망 사업자)

< 도매제공 대가산정 기준에 따른 예상 할인율 >

- **(단순MVNO)** 단순MVNO는 자체 설비 투자 없이 100% MNO의 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할인율은 MNO의 소매관련 비용으로 한정
 - 도매제공대가는 소매요금에서 31%를 할인하는 수준으로 산정
- **(부분 및 완전MVNO)** MVNO가 일부 설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매 관련 비용 이외에 설비 관련비용도 할인율 계산에 포함
 - 설비보유 정도에 따라 소매요금의 33%~44%를 할인하되, 구체적 대가는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9. 10(금),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10)